

공수처법 개정안, 비토권 무력화·재판 수사 실무 자격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7분의 6'→'3분의 2' 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흥회검찰'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법여권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7월 15일 시행된 공수처법은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

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 2인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야당 측에서 반대하면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이 비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천위는 4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중

료를 결정했다. 비토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결국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여당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꾼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강행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배제하고서 당연직 추천위원 3명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완화 조항이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경력만 있더라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안은 공수처 검사를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로 고쳤다. '재판수사 실무경력 5년' 자격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추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 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금태섭 "김학의·우병우 공수처장 가능...독재국가에도 없어"

"사법부 독립성 훼손·檢 정적 탄압 동원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 전 차관, 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덧붙였다.

뉴스스

소병철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 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철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를 통해 제공되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컬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이재명, 직무수행평가 시도지사 중 1위... 6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율 40대 73.6%, 30대 71.7%로 높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6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11월 광역자치단체장(서울·부산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긍정평가(지지율) 66.6%를 기록, 선두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25.5%로 집계됐다.

이 지사의 긍정평가는 지난달 대비 0.4%포인트 내렸지만, 2위 김영록 전

남도지사(63.1%)와 3위 이철우 경북도지사(54.0%)에 앞서며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52.7%), 송하진 전북도지사(50.4%), 최문순 강원도지사(49.9%) 순이었다. 하위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30.4%), 박남춘 인천시장(41.1%), 이준희 세종시장(41.4%)의 순이었다.

이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0대(73.6%)와 30대(71.7%)에서 70%

를 넘었고, 50대(67.1%)와 60대 이상(65.0%)에서는 6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20대 이하(55.8%)는 50%대 중반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양·김포 등 북서권(73.0%)과 성남·이천을 포함한 동부권(70.5%)에서 70%를 상회했고, 북부권(68.6%)과 남서권(68.6%), 남부중심권(64.3%)에서는 60%대 중후반이었다. 안산·안성 등 남부외곽권(56.9%)은 50%대 중후반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지사의 경기도정 수행에 대해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55% 이상이 긍정

뉴스스



평가 하고 있으며, 특히 3040세대와 북서·동부권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11월 직무수행 평가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10월24~31일, 11월23~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7500명(광역단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